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2회 제1차 정례회

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 계정
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5 6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

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6. 16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- 제출일자: 2025. 5. 29.(목)
- 회부일자: 2025. 6. 13.(금)
- 검토기간: 2025. 6. 13.(금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
- 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일시적인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향후 주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는 등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에 따라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함.

3. 주요내용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됨.
- 이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기존 예치금 9,783,474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향후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임.

(단위: 천원)

구분		편성목	경정액	기정액	증감
재정안정화 계정	수입변경	변경없음			
	지출변경	602-01 일반예치금	288,612	10,072,086	△9,783,474
		701-01 기타회계전출금	9,783,474	0	9,783,474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및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이번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일반예치금 100억 7,208만 6천원 중에서 97억 8,347만 4천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는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명시하고 있고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제4항은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명시하고 있음.
- 다만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④ <생략>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

②·③ <생략>

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5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
3.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4.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
5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6.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⑤ (삭제 2025. 2. 21)

제9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